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97호
의 결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안년월일 : 2008. 9.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조번호를 일치시킴.(안 제1조 및 제6조)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정함.(안 제3조)

- 정례회는 42일 이내(1차: 10일 이내, 2차: 32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4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임시회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함.

다.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7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회의”로 하고, “범위”를 “범위 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2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4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월 7일”을 “7월 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 ---------- ---------- ---------- ---------- ----------범위 내----------.
제3조(회기)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한다.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42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는 32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4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48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집회일) ① ----------7월 1일----------.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34조에 따른---------- ② ----------제41조에 따른----------제127조에 따른----------그 밖에----------.
	③·④ (현행과 같음)